

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	82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1년 3월 9일

발의자 : 김종구의원 외 11인

1. 주문

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합니다.

2. 제안이유

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37조
-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의규칙 제70조

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

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회의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출석일시 : 2001. 3. 14 ~ 3. 15(2일간)
- 출석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- 출석이유 :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

[서울특별시]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(3)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사장,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

[서울특별시교육청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 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

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요구서

의안 번호	812
----------	-----

요구년월일 : 2001. 2. 27

요구자 : 김성규의원 외 40인

1. 근거규정 :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

2. 조사의 목적

- 학교급식법 제3조, 제4조에 의거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있는 영양식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,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한 국민식생활개선 및 전인적인 인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초·중·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
- 일부학교에서 위탁급식운영업체 선정의 불공정, 급식품 구매·검수의 부적정, 불량우유급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
- 위탁급식운영업체 선정과정, 위탁급식운영실태 및 각종 규정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보완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조사할 사안의 범위

- 위탁급식운영업체선정과정
- 위탁급식운영실태
- 위탁급식관련 각종 규정준수여부
- 급식품 구매·검수사항 이행여부

4. 조사시행위원회 : 문화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
활동결과보고서

1. 구성배경

6·15 남북공동성명 이후 민족의 화해,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반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게 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였음.

2. 구성근거 :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

3. 구성경위

- 구성결의 : 2000. 9. 1(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)
- 위원선임 : 2000. 9. 8(제1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)
- 위원장, 간사선임 : 2000. 10. 9(제122회 임시회 제1차 남북교류협력지원특위)